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77
----------	------

발의연월일 : 2017. 2. 24.

발의자 : 신보라 · 김성찬 · 박덕흠
김석기 · 박명재 · 하태경
이종배 · 이우현 · 송희경
문진국 · 이학재 · 김선동
의원(12인)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그럼에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4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과태료) ① · ② (생 략)</p> <p><u>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p> <p><u>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무역위원회는 자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u></p> <p><u>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p>	<p>제4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